

연금저축손해보험 **KB 다이렉트연금보험**(25.01) 약관

★ KB 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그린 <GREEN 지구 캠페인> KB손해보험과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 종이약관 대신 모바일약관으로 시작하세요.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목 차

약관 이용 가이드북 / 요약서
약관 이용 가이드 북7
약관 요약서
공통사항
보험약관 이해하기 23 보험용어 해설 24 주요내용 요약서 25 가입자 유의사항 26 자주 발생하는 민원 30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31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33 고객정보 취급방침 36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0 제1조(목적) 40 제2조(용어의 정의) 40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42 제3조(연금의 지급) 42 제4조(주소변경통지) 43 제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43
제 3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4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44

제7조(청약의 철회)	·46 ·47 ·48 ·50 ·51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52 ··52 ··53 ··54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19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제2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21조(해약환급금) 제22조(보험계약대출) 제23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55 ·56 ·56 ·57 ·57
제 6 관 분쟁의 조정 등 제24조(분쟁의 조정) 제25조(관할법원) 제26조(소멸시효) 제27조(약관의 해석) 제2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0조(개인정보보호) 제31조(준거법) 제3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58 .58 .58 .59 .59 .59 .60

특별약관

제 1 장 제도성 특별약관	62 62
<mark>별표</mark>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34
약관에서 인용된 법ㆍ규정 【법규1】개인정보 보호법 선 【법규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선 【법규3】소득세법 선 【법규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구 【법규5】전자서명법 구 【법규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	68 69 70 73
특별약관 색인	7 9

약관 이용 가이드 북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Guid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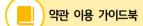
※ 同Guide Book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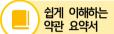
01 보험약과이라?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 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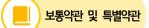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보통약관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 선택하여 가입한 보장내용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보험용어의 해설.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03 O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O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0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랍 니다.

	①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 (연금의 지급)	P42
교육 (미년)영상자료	② 청약 철회 제7조 (청약의 철회)	P44
□ ¥ 시□ 66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③ 계약 취소 제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46
□ 성		P53
B () B () () () () () () () ()	(3 부활(효력회복)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P54
■[655] 1055 1055	③ 해약환급금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제21조 (해약환급금)	P56 P57



보험계약대출

제22조 (보험계약대출)

P57

0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6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0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 요약서 P7
0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항목 P9
03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용어 해설 P24
04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 P8
0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P65
06	약관조항 등이 <mark>음영·컬러화</mark>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	금 지급 등 약관 주요

06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kbinsure.co.kr), 고객 콜센터(1544-0114)로 문의 가능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同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보험상품의 종목

KB손해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KB 다이렉트연금보험(25.01)

연금저축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 이 상품은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으로 소득세법으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개시 시점 적립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상품입니다.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연금저축손해보험 KB 다이렉트연금보험(25.01)

- ①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는 상품입 니다.
- ❸ 다이렉트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 가능한 상품 이며, 대면 상품 대비 사업비가 절감되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 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 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600만원 한도 내)의 13.2%(지 방소득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하는 상품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0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보험



- ① 이 보험은 연금저축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②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연동형 보험

금리연동형

(적용금리 변동)

최저이윸보장

5년 미만: 1.25%

5~10년 : 1.0%

10년 이상 : 0.2%



- . (
-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5년 미만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2%입니다.
 -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 이율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① 이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 사가 보호합니다.
-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합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7조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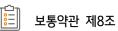


☑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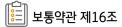
청약일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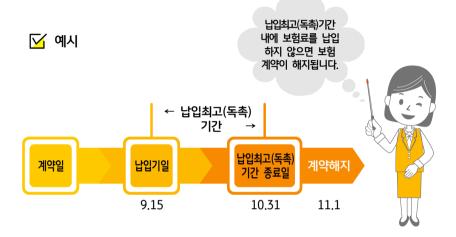


-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
 - ②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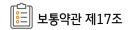


-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 약이 해지됩니다.
 -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 납입연체 :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04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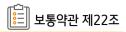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의 부활(효력회복) 승낙 시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 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해약화급금 지급 예시

환급금 내역서				
쉐야하고그	공제금액			시 스켬에
해약환급금	원금	이자	계	실 수령액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보험약관 이해하기

■ 보험약관이라?

☞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 보험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은 법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 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마련된 「표준약관(별 표15) 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작성됩니다.

■ 본 약관의 구성

1. 보험 가이드

· 보험용어해설	·자주 발생하는 민원
· 주요내용 요약서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가입자 유의사항

2. 고객 안내사항	3. 보험약관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 보통약관
대한 고객권리 안내	· 특별약관
· 고객정보 취급방침	• 별표

■ 기타 문의사항

- ☞ 당사 홈페이지(www.kbinsure.co.kr) 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 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내용이 궁금하거 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계약변경.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MY KB, 콜센터(1544-0114)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음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MY KB	계약조회, 고객정보 변경, 계약 변경, 계약해지/청약철회, 보험료납입/지급, 증명서 발급 등
콜센터 1544-0114	계약관리, 사고접수, 보상, 각종 상담문의 등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과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부헝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주기 별로 계속 납입하 기로 한 보험료
- ·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성립 후부터 연금지 급개시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단, 계약자 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 약해당일 까지의 기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납입하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임.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주요내용 요약서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히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수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부험약관과 계약자 부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 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 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부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부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 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 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 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 지 않습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 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연금저축손해보험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 만 55세 이후 수령
-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
$$= \frac{ 과세기간개시일^{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연금수령연 주2) $} \times 1.2$$$

-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 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주)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 성형수술 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 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 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작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작에서 의료 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 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 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 과세(적용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하여 과세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 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수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OI를 합산하려 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1. 계약자의 사망
 - 2. 천재 · 지변
 -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 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 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 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 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 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 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

■ 해약환급금 관련

- 사례 : 홍길동 계약자는 계약 후 1년경과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

- 해설 : 보험계약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다른 피보 험자의 보험금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변동 관련

- 사례 : 홍길동 계약자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 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은 것에 불만을 제기

- 해설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 험료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 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며,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 립부분 계약자적립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계약 보험료 중 다음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 (또는 금액) 안내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30만원)

구 분	목 적		목 적		시기	비용
	계약 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보험관계	비용	유지 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1.5% (4,500원)		
비용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3.0% (9,000원)		
				납입기간이후 거치기간중 계약자적립액에서 2,500원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25%		
해약공제		I에 따른 대널티	해지시	아래 "■ 해약공제 비용" 도표 참조		

■ 해약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이상
해약공제 금액(만원)	0	0	0	0	0	0	0	0
해약공제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주) 해약공제비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공제금액의 비율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30만원)

10년이내	10년초과 2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기본보험료의
4.50%(13,500원)	3.0%(9,000원)

■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기	비용
취내입보험료	계약유지·관래용	납입시	추기납입보험료의 1.5%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 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 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 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 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신 청 방 법

● 전화 : ☎ 1544-0114 (지역번호 없이)

● 서면 : 135-5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喜페이지: http://www.kbinsure.co.kr

[인터넷창구 > 고객정보변경 > 개인정보활용동의철회]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 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유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 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 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 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 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 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1000

인터넷 www.koreacb.com

· NICE평가정보㈜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KB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02)6900-2114	(02) 3702-8500	(국번없이) 1332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7 KB손해보험빌딩 정보보호파트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콜센터 [☎ 1544-0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 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 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 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 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 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 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보등(위 금융 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참조)

Ⅱ.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 능한 회사는 K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증권(금융투자업), KB손해보험(손해보험업), KB국민카드(신용카드업), KB라이프생명(생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 문),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부동산신탁(신탁업), KB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KB인베스트먼트(투자 및 융자업), KB데이타시스템(시 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B신용정보(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 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 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 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 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 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 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①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 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 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 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ž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 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 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 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ハロナビーの	고객정보관리인
KB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KB라이프생명	고객정보관리인
KB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KB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데이타시스템	고객정보관리인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KB캐피탈 KB저축은행

보통약관

연금저축손해보험 KB 다이렉트연금보험(25.01)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을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의 "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 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 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관 련 법 규	(대통령령 제3193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 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2005. 6. 30>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 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견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주기 별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적립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성립 후부터 연금 지급개시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 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 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 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납입하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연금의 지급)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금지 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 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1】참조)에 따릅니다.
-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 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0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 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5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1.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 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2.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 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3.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

단위 복리 1 2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 0% 10 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 2%를 적용합니다

- 4. 세부적인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연 금저축-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 7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회사의 인 터넷홈페이지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용 어 풀 이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친저보증())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 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가입후 5년 이내 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2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 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2%)로 적립됩니다.

•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 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부지표금리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 권 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제4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 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 3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 1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 어 풀 이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7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용어풀이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 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 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 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 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 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 Cł.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 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4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5]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제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 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 은 경우
 -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에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5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을 포함합니다.

용 어 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기한·행사방법·효과 등)
-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포 함)
-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관 련 법 규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전자서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 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 2.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3. 기본보험료
 -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전 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4] 제1항에 따라 기본보험료 등의 감액 또는 증액시 연금액 및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연금액 및 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용 어 풀 이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 ①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 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 독세(16.5%,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1.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2. 만 55세 이후 수령
- 3.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용 어 풀 이

• 연금수령하도

연금 = $\frac{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11 - 연금수령연차^{주2)}) <math>\times$ 1.2

-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 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용어풀이

•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 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 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적용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하여 과세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 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 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로 분리과세합니다.
 - 1. 계약자의 사망
 - 2. 천재 · 지변

-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합니다)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 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5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 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 독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7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 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 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 图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으 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의료비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 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신분증"

이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을 말 한니다

4] 제3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보험나이 계산

생년월일 : 1994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4년 4월 13일 ⇒ 2024년 4월 13일 - 1994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계약해당일 계산

친추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 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2024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계약일: 2028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제12조(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 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부험자가 사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 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부 가 설 명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포항하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 가 설 명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 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관 련 법 규

-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용 어 풀 이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미경과보험료

미경과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사업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할 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차감합니다.

제13조(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 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 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보험료의 납입 및 한도)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계약 성립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②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월납 150만원, 3개월납 450만원, 연납 1,800 만원으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 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보험계약대출)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

을 기본부럴류의 난입체고(돌촉)기간까지의 이자(부혈계약대출이율을 전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기본부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 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부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 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 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 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4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5]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 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를 포함합니다)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용 어 풀 이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 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목촉)와 계약의 해지)

-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부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치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 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 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4]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 보험료 납입후 계약자적립액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및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리 비용))을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의 경우 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의 경우 매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하며,이계약의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5]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 시점은 자동연기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 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 기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용 어 풀 이 부활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18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 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

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 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 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 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 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4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 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 5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 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 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6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 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7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을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의 경우 보험 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의 경우 매월 계약 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 图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유예 신청시 납입유예기간에 사업비가 차감되어 적립금액이 감소하고, 잔액부족시 납입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험료 납입유예신청 서를 통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 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 2.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

- 금. 미경과보험료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 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5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 1. 이전신청일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 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 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7.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 어 풀 이 위법계약

위법계약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2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별표1】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19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 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1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지급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 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 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합니다.
 -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2.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3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6 관 분쟁의 조정 등

제24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 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 가 설 명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4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7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용 어 풀 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민법」제2조 제1항)

관 련 법 규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좋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 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 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 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 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 니다.

용 어 풀 이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부험자 및 부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부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부험수 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 어 풀 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 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30조(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관 련 법 규 시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2항

회사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 어 풀 이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 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 다. 이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특별약관

제1장 제도성 특별약관

연금저축손해보험 KB 다이렉트연금보험(25.01) 약관



제1장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 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

제1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 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전자서명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 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①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계약자의 알릴의무)

-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 (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이하 "전자적 주소"라 합니다)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적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 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적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적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 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적 주소를 사 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적 립 이 율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의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보험계약					
	지급일까	대출이율					
해약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현	<u>.</u>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50%				
	청구일까	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40%				
		다음 날부터 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연금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26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ㆍ규정

※ 아래의 법·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 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 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개정 2020.2.4.>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

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 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한다.
 - <신설 2017.4.18., 2017.7.26., 2020.2.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 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 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 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 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 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 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 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 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8.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

<개정 2015.7.24.>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2.4.>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2.4.>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2.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2.2., 타법개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 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 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 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2017.10.17.>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법규3 소득세법

[시행 2023.1.1.] [법률 제18975호, 2022.8.12 일부개정]

제1조의2(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①~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2. 생략
 -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 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 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 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이하생략)

제20조의3(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 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 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 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 "연금입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주제2항에 따라 원천장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 (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 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 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법규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2020.6.9.>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 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

신용정부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 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④ 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2020.2.4.>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 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 ·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 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 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 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 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 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 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 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 ®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생략)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 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4.]

법규5

전자서명법

[시행 2021.6.10.] [법률 제17354호, 2020.6.9., 전부개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 신되거나 저장된 정부를 말한다.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이하 생략)

법규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문금융소비자"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 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적합성원칙)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 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정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

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의무)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 투자성 상품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예금성 상품
 -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 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 이자율 · 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 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계 제휴서비스등의 내용
-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경하다.

[시행일 : 2021.9.25.] 제1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 공받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 요하는 행위
 -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

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 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2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 고 알리는 행위
-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 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 : 2021.9.25.] 제2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6조(청약의 철회)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재화 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 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 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을 반환한 때
 -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등
 -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 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 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46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 제 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4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특별약관 색인

(u)	
보험료 자동납입	62
(ㅈ) 전자서명	63
(ㅊ)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	62

★ KB 손해보험